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303950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3039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나20254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보영, 정원

피고, 피상고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김기옥

판결 선고 2022. 1. 1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나20254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배당이의소송의 증명책임 및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사해행위청구 및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조재연

대법관민유숙

대법관천대업